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46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정희용 · 강대식 · 이달희
고동진 · 박충권 · 박준태
최수진 · 조승환 · 김성원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 간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였거나 상속받은 농지 중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 또는 농업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제도 도입 당시의 농업 구조와 인구 여건 등을 전제로 설정된 것으로, 최근 급격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농촌의 유허농지 증가 등 변화된 농업·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60세 이상의 사람이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 생산기반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5년이”를 “2년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u>5년</u> 이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 ----- ----- ----- ~~-2년~~ 이-----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u>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나. <u>3년</u> ----- ----- ----- -----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